

예의 사라진 군대... 입으로만 용사의 가치 떠들지 마라



문형철 기자의
어수선하軍

경례·점호 등 필요없다는 용사들
육군수뇌부, 용사 자질 육성 의문
군인 감시·교육 제도 뒷받침돼야



육군 이미지.

/유토이미지

‘용사(勇士)’의 뜻은 용감한 전투원을 의미한다. 언제부터인지 육군은 ‘병(兵)’ 신분의 군인을 아울러 용사라 칭하고 있다. 최근 모부대 건의사항을 보면, 육군이 용사로 떠받드는 병들이 진정한 용사일까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입과 현실이 다른 것은 ‘K국방’의 특징일지도 모른다.

이번 건의사항에는 ▲경례를 왜 해야 하나 ▲점호를 해야 하나 ▲땀결음이나 체육활동을 하지말자 등의 내용이 입대 한지 얼마되지 않은 후임병들로부터 나왔다. ‘거꾸로 돌아가는 군대’라는 표현이 딱 맞다. 육군이 뒤집히면 곤봉이 되

는데 ‘용사여 곤봉을 죽이세요’라는 표현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부대 밖에서 장교 등 선임자를 보고 경례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기본적인 예의가 사라진 군대다. 최근 들어 전투복 상의를 입지 않고 전철과 노상을 활보하는 육군 장병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띈다. ‘예비군일 것이다’, ‘동사무소 상근병일테지’라는 반응이 나온

다. 동원예비군을 비롯해 예비군 소집과 퇴소시간도 아니었고, 동대 상근병의 활동범위를 넘어선 이동이었다.

용사를 떠받드는 육군에 직접 담은 사진과 함께 원인을 물어보면, 항상 그럴듯 관계자들은 “출다 전 교육을 했을 것이다.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나온다. 정신력을 강조하는 육군에게 당나라군 취급하는 미군과 일본자위

대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다. 오죽하면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지역의 여성 시의원이 비웃겠는가.

‘끌려 온 군대인데 병들이 더우면 옷 좀 벗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MZ장병들에게 전투복은 더우면 어디서나 벗는 게 더 합리적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혹독한 상황에서 인내를 냉정을 찾고 질서를 유지해야 군인에게는 평상 시 몸에 익혀두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군인들을 기다리는 전쟁터는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갈증, 고통과 공포가 도사린다. 평소에 군복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할 정도의 마음가짐으로는 냉정을 찾기 힘들 것이다. 평상심을 잃은 군인과 부대는 승리를 위한 질서있는 퇴각과 전진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약탈과 강간, 방화와 파괴를 더 걱정해야 할지 모른다.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에도 없는 신분인 용사를 제정한 육군수뇌부가 진정한 용사의 자질을 키워주고 있는지 되묻는다. 장병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

려워 ‘딤서비스’라고 해보겠다는 군수뇌부의 의중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군기마저 붕괴돼, 조직의 유지도 벅차 허우적거리는 군대라면 적어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군당국이 용사의 기본자세인 군기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시민사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입으로 ‘했다치고’만 외치는 군수뇌부에 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군기감시음브즈맨 제도를 통해 시민 모두가 군인을 감시하고 교육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지도 모른다. 포상신고제도 도입도 고려할 법하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군인에게 헛군기를 잡거나, 혼만 내어서도 안된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모범을 보인 군인들에게는 칭찬과 포상이 주어지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군사경찰도 군기순찰을 포기하고, 지휘관들도 눈치만 보며 립서비스에 빠진 육군의 미래는 우크라이나군에 쫓기는 러시아군과 같지 않을까.

/문형철 기자 captinn@metroseoul.co.kr

‘외국인 총수 지정’ 일시정지... 통상 마찰 우려

공정위, 관계부처와 내용 등 협의
美,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우려

정부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넣을 계획

이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광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총수라고 판단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다만 공정위는 쿠광 등 특정 기업을 지목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각종 세부 요건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에 통상 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 자본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광의 경우 법인이 총수일 경우 쿠광과 계열사 거래만 공시하면 되지만,

김 의장이 총수가 될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의 거래도 공시 대상이 되면서 미국 본사 계열사 거래와 외국인 임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동일인이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취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누락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1일 지정된 대기업집단 76곳 중 동일인이 법인인 ‘총수없음’ 곳은 총 11곳이다. 쿠광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스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다른 외국계 기업집단이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쿠광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는 반면 에스오일 등은 총수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도 이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내용도 포함돼 있어 개정안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지속되면 국정과제 수행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새롭게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부정유통 우려 품목
‘유통이력관리’ 추가

오늘부터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와 유통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입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대상품목은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팔,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이었다.

농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품목 대상 지정기간이 7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13일 개최했다.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 14개 품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며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4개 품목은 추가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양돈사료 내 중금속 줄인다... 환경부담 저감 추진

농식품부 사료 등 기준·규격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양돈 및 양계사료에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해 환경부담 저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인의 경우 성분분류 사항 변경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유럽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해서 낮춰왔으며,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

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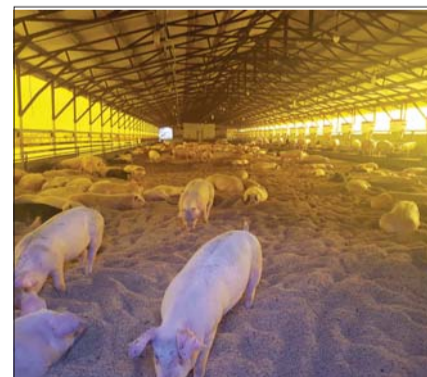
그간 산화아연과 황산구리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퇴비화 과정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의 사용을 증가하면서 퇴비 품질이 떨어지는 등 양돈농가와 퇴비업체에서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이 건의돼 왔다.

게다가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P)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성분등록을 통해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산화아연은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며, 인은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양돈용 배합사료에서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0.6~0.7% 이하로 관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중금속 희석비용에 해당하는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의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연간 169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경욱 축산정책국장은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은 양돈농가와 퇴비처리 업체의 오랜 숙원과정으로 환경친



경북 군위군 부계면 한 양돈농가

화적인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인의 적정 수준 사용을 위해 사료업체가 고품질의 인산칼슘을 사용하거나 인분해효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사료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